



가스안전

LP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대책

한국가스안전공사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동원가스충전소 LPG폭발사고와 관련, 유사한 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LPG충전소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협회로 송부해 왔다.

배경

LPG충전소에서 가스시설을 임의 분리하는 과정에서 가스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 사고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함.

I. LPG충전소 사고방지 대책

태료에 처함.

이충전작업시 기준 준수

-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탱크로리)이송작업시 안전관리자 기준 철저 준수
- 탱크로리로부터 저장탱크에 가스 주입 시 작업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 고시 제9-3-3조제5항의 규정(붙임 2. 참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자가 하여야 함.
- 또한, 안전관리자가 가스 이송작업시에는 동 규정의 이송작업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함.

※미준수시 액법 제48조제2항에 의해 안전관리규정 미준수로 200만원이하의 과

안전장치 등 시설 보완

- 로딩암 시건조치(권고사항)
 - 안전관리자의 입회시에만 이송작업이 가능하도록 로딩암에 자물쇠 등으로 시건 조치
- 신설 프로판, 부탄 겹업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스 이송용 배관을 가스별 충전이 가능하도록 분리(권고사항)

점검시 확인사항

- 가스배관에 가스의 종류 및 방향 표시 철저

- 액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나목(4)의 규정에 의하여 밸브 등이 설치된 배관에는 가스의 종류를 LPG가 아닌 ‘프로판’, ‘부탄’으로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표시하여 잘못 충전되는 사례 방지
 - 밸브의 개폐표시 부착여부와 가스의 종류 및 방향이 적합하게 표시
- 전문교육 이수
- 안전관리자는 신규 종사후 6월 이내에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가스 이송작업 기준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9-3-3조제5항

차량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저장설비 등에 가스를 주입하는 작업(이하 “이송(移送)작업”이라 한다)을 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소의 안전관리자가 직접 다음 기준에 적합하게 작업을 하여야 한다.

- 차를 소정의 위치에 정차시키고 주차브레이크를 확실히 건 다음, 엔진을 끄고(엔진구동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매인스위치 그 밖의 전기장치를 완전히 차단하여 스파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커플링을 분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엔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
-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지 않도록 차바퀴의 전후를 고정목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시킬 것.
- 정전기제거용 접지코드를 기지(基地)의 접지탭에 접속할 것.
- 부근에 화기가 없는지를 확인할 것.
- 「이입작업중(충전중) 화기엄금」의 표지판이 눈에 잘 띠이는 곳에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할 것.
-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저온 및 초저온 가스의 경우에는 가죽장갑 등을 끼고 작업을 할 것.
- 만일 가스누출을 발견한 경우에는 긴급차단장치를 작동시키는 등의 신속한 누출방지조치를 할 것.
-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전자는 이입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탱크로리차량의 긴급차단장치 부근에 위치하여야 하며, 가스누출 등 긴급사태 발생시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차량의 긴급차단장치를 작동하거나 차량이동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이송전후에 밸브의 누출유무를 점검하고 개폐는 서서히 행할 것.
- 탱크의 설계압력이상의 압력으로 가스를 충전하지 않을 것.
- 저울, 액면계 또는 유량계를 사용하여 과충전에 주의할 것.
- 가스속에 수분이 흡입되지 않도록 하고, 슬립튜브식 액면계의 계량시에는 액면계의 바로 위에 얼굴이나 몸을 내밀고 조작하지 말 것.
- 액화석유가스충전소내에서는 동시에 2대 이상의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서 저장설비로 이송작업을 하지 않을 것.
- 충전장내에는 동시에 2대 이상의 차량에 고정된 탱크를 주정차 시키지 않을 것. 다만, 충전가스가 없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